

##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 분석 연구

명 소 연\*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한 경 근\*\*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장 철 승\*\*\*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

### 《 요 약 》

---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 분석을 통하여 각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을 위한 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2곳 지자체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체제 필수 요소에 따라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각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일반적인 구조는 지자체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추진의 책임자이고, 시·도 지자체인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는 전반적인 평생교육 계획 수립 및 의사결정의 협의·조정·자문 기구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위원회’와 같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가 제정된 11개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나 학습장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사천시와 군산시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자문 기구로 ‘운영위원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구가 구성되어 있다.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첫째, 일반과 교육 행정 부분의 역할이 상호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시·도평생교육협의회 구성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 평생교육 주체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시설의 기능과 조직 구성, 담당인력 배치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화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 확보와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주제어 : 장애인 평생교육,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추진체제, 평생교육지원체제

---

\* 제 1저자

\*\* 교신저자 (kghan@dankook.ac.kr)

\*\*\* 공동저자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기회균등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사회교육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1982년 최초 「사회교육법」을 제정하였고, 3차례 개정을 거쳐 1999년 현 평생교육의 모범이 되는 「평생교육법」을 제정하여 국가 평생교육진흥 체제를 구축하였다.

2007년 「평생교육법」의 전면 개정을 통하여 국가 평생교육진흥 체제가 기존의 국가-시도교육청 체제에서 국가-시도-시군구 체제로 전환되어 일반 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평생교육진흥원, 2011). 이후, 개정된 「평생교육법」규정에 따라 전국 17개의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실상 각 시·도 지자체의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비하여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에 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권인탁, 2012).

시·도나 시·군·구 단위에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사업 근거는 지자체별 조례라 할 수 있다(평생교육진흥원, 2011). 또한 「평생교육법」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관련 조례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이는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현되지 않는 법은 규정으로만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양병찬, 전광수, 2012).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실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추진을 위한 실패줄과 같은 역할을 하며, 지역 내 장애인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실현을 위한 중요한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 책임기관의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정영선, 2011).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의 평생교육시책을 수립하여 국가와 함께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시행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민을 위하여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평생교육진흥원, 201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시도-시군구 평생교육 추진 체제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밑바탕이 된다. 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추진 체제에 적용하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반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고,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같은 해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명시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국한된 교육 장소 및 형태와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김기룡, 이경준, 2017).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15년 6월 30일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평생교육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작년 6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되기 이르렀다. 사실상 이번 「평생교육법」개정은 전면 개정이 아닌 일부 개정이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내용을 삽입한 대폭 개정이다(이희수, 2016).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포항시(경상북도 포항시조례 제1155호, 2013), 군산시(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118호, 2013), 사천시(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079호, 2014) 등 몇몇 지자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부산광역시 등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라는 점, 조례를 근거로 장애인의 평생학습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조례를 제정하여 「평생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를 통틀어 전국에서 단 12개일 뿐이다.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지자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 내용을 분석하여 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 내용을 분석하고, 조례에 반영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추진체제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각 지자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평생교육법」에 의해 이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의 내용은 어떠한가?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에 반영된 추진체제의 모습은 어떠한가?

## II. 「평생교육법」의 주요 개정 내용

2016년 5월에 시행된 「평생교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07년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마련되어 있었으나 각급학교를 비롯한 평생교육 시설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일부 개정법률안이 2015년 6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사실상 이번 「평생교육법」개정은 전면 개정이 아닌 일부 개정이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내용을 삽입한 대폭 개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희수, 2016).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관련 조항이 수정 또는 신설되었다. 이는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성 제고,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 주체의 참여 보장,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 구축, 넷째, 전문 인력 배치 근거 마련 등이다(김기룡, 2016).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책무성과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제5조 제2항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5조 제1항에서 이미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의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2항을 신설한 것은 평생교육 현장에서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 조항의 신설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신설 조항인 제19조의2에서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국가가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해야 하며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이제껏 장애인 평생교육의 핵심업무를 담당해왔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김두영, 박미진, 정진숙, 2016). 장애인 평생교육 전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과적인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김기룡, 2016).

일원화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체제 구축을 위하여 기존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제34조를 「평생교육법」에 이관하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를 「평생교육법」 제20조의 2로 이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감이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

영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 및 설비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조항에서 학교형태로 국한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및 지정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제공기관 확충에 기여할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장애인평생교육과정)는 「평생교육법」 제21조의 2로 이관되었다. 각급학교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에서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방안과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평생교육과정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분석대상

이 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7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수집하였다. 수집 방법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과 법제처(www.moleg.go.kr) 홈페이지에서 장애, 평생교육을 검색 키워드로 하여 나온 15개의 평생교육 관련 조례 중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제정된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제외한 시·도 지방자치단체 6곳, 기초 지방자치단체 6곳에서 제정된 총 12개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의 제정 현황은 <표 1>과 같다.

6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9권 제2호)

〈표 1〉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연번	구분	지자체명	조례명	제정연월
1	시·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2017. 7
2		경기도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2
3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2016. 12
4		전라북도	전라북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5. 7
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16. 7
6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16. 6
7	시·군·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17. 9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17. 7
9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8
10		전주시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2017. 2
11		군산시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2013. 12
12		사천시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3. 10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는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2013년 10월 30일 제정,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060호)가 처음 제정이 되었고, 이를 시작으로 동년에 전라북도 군산에서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2013년 12월 12일 제정,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118호)가 제정되었으며, 2015년에 「전라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그 후 2016년에 경기도와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5개의 지자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2017년 현재 서울, 전주 지자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준별 현황을 살펴보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12개 가운데 시·도 단위의 지자체는 6개이고, 시·군 단위의 지자체는 4개이며, 구 단위는 2개이다. 이처럼 현재 시·도 및 광역시 단위의 지자체가 가장 많고, 구 단위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 제정이 가장 적다.

## 2. 분석 방법

이 연구는 12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대상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해 이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법」의 주요 개정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시행 의무,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실행 위원회 체계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를 분석변인으로 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평생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책무성이 조례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추진체제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요소인 지자체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주체, 지자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협의회의 구성,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 조정 등의 요소를 분석변인으로 선정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최상근(2006)의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추진체제를 추진주체, 협의체 구성과 기능, 시설 및 운영, 재정 등 5개 변인을 설정하여 분석한 바 있으며, 하봉운(2008) 연구에서는 추진조직 및 네트워크, 재정적 지원, 전략 및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상근(2006)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의 추진체제 분석틀을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제 분석틀

1	지자체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주체
2	지자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협의회 구성과 기능
3	지자체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시설과 기능 및 시설운영 조직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5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 조정

분석기준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특수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교수 2인의 검토를 통하여 분석대상 조례와 분석 기준에 대하여 협의를 한 후, 연구자와 장애인 평생교육 전공 박사과정생 2명이 분석대상 조례를 분석틀에 따라 독립적으로 분석하도록 하였고, 이후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분석내용을 일치시켰다.

## IV. 연구결과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 내용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 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다(지방자치법 제22조).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 존재한다. 즉,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는 「평생교육법」을 근간으로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평생교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시행, 장애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평생교육 위원회 체제 구축,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등이 개정된 주요 내용이다. 현재 지자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가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제정된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평생교육법」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시행 의무

이번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임무가 추가로 규정되었다(김두영, 박미진, 정진숙, 2016).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

「평생교육법」 제5조를 근거로 지자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상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주체 및 계획 수립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 모든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고, 임무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구리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나 시행 및 지원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 구리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이 아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3〉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상 시행 주체 및 계획 수립 현황

연번	구분	지자체명	주체	계획 수립 관련조항
1	시·도	서울특별시	시장	제4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2		경기도	도지사	제4조 지원계획
3		대전광역시	시장	제4조 시행계획 수립
4		전라북도	도지사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5		광주광역시	시장	제4조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6		제주도	도지사	제4조 지원계획 수립
7	시·군·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장	제4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8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청장	계획의 수립·시행
9		경기도 구리시	시장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10		전주시	시장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11		군산시	시장	제4조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12		사천시	시장	제4조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 2)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실행 위원회 체계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실행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은 시·도 소속으로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를, 시·군·자치구 소속으로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12조(시·도 평생교육협의회)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를 두고 있고, 제14조(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는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두고 있다(홍성우, 김종래, 2013).

1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9권 제2호)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④ 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5. 29.>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④ 시·군·구협의회 위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5. 29.>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지자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상 협의회 구성에 대한 결과를 보면 <표 4>와 같다.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장애인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규정하는 곳은 경기도, 광주광역시, 군산시, 사천시 4곳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원회의 명칭은 지원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로 규정하였다. 위원회 구성은 경기도는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고, 군산시는 10명에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사천시는 1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다. 광주광역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표 4>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상 협의회 구성 현황

연번	구분	지자체명	협의회 관련 조항
1	시·도	서울특별시	× (제9조 자문)
2		경기도	3장.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위원회 제7조~제15조
3		대전광역시	× (제9조 자문)
4		전라북도	×
5		광주광역시	제8조 위원회 설치
6		제주도	× (제7조 자문)
7	시·군·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
8		서울특별시 종로구	×
9		경기도 구리시	×
10		전주시	×
11		군산시	제9조 학습장 운영위원회의 설치
12		사천시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그 밖에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제주도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서울시 종로구 및 노원구, 경기도 구리시, 전라북도, 전주시는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조항이 없었다.

###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셋째,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와 제21조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와 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지역차원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그 운영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으로 하여금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김두영, 박미진, 정진숙, 2016).

---

**제20조의2(장애인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4. 1. 28., 2016. 5. 29.>  
1의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1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9권 제2호)

<표 5>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현황

연번	구분	지자체명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관련 조항
1	시·도	서울특별시	제6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2		경기도	제6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위탁
3		대전광역시	제6조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
4		전라북도	×
5		광주광역시	제7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6		제주도	제6조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 등
7	시·군·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5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8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6조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9		경기도 구리시	제9조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10		전주시	제5조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11		군산시	제6조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12		사천시	제7조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지자체 장애인 평생교육 조례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정·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곳은 11개 지역으로, 전라북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자체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규정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도, 노원구, 사천시의 경우 “교육시설” 또는 “교육기관”으로, 종로구, 구리시, 전주시의 경우에는 “교육센터”로, 군산시에서는 “학습장”으로 각각 명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운영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비, 장애인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업비 등에 관해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표 6>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의 주요 골자를 표로 비교한 것이다.

〈표 6〉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의 주요 골자

지역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광주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지원 사업	접근성 향상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운영지원
구리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	기본 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군산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실태 조사 및 계획 수립	지원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학습장의 사업
대전	목적	정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지원
사천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사업의 심의	지원	성인중증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설치 및 운영
서울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설치 등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서울 종로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	계획의 수립·시행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지원
전라북도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등	보조금 지원	실적 보고	지원의 중지
전주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등	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지정 및 지원	센터의 업무	지도·감독
제주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 등	자문
서울 노원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평생교육 사업의 지원	시행 규칙
경기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장애인평생교육지원사업	장애인평생교육 시설 설치 및 위탁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위원회 설치

1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9권 제2호)

<표 6>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의 주요 골자(계속)

지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광주	위원회 설치								
구리	복지 시설의 확충 등	평생교육 센터 지정 및 지원	평생교육 센터의 업무 및 역할	지도 감독	협력 체계 구축	비밀 준수 의무			
군산	학습장 종사자	학습장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 위원회의 기능	시행 규칙					
대전	접근성 향상	자문	협력 체계 구축						
사천	평생교육 시설의 사업	평생교육 시설 종사자	운영 위원회 설치	운영 위원회 기능	시행 규칙				
서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위탁	자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 규칙					
서울 종로	협력 체계 구축	시행규칙							
전라 북도	지원금의 환수	포상	시행 규칙						
전주	시행 규칙								
제주	시행 규칙								
서울 노원									
경기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위원회 기능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위원회 구성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위원회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간사	의견 청취 등	수당과 여비 등	시행 규칙

## 2.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나타난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제

평생학습 지원 체제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전 생애에 걸쳐 학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사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적·물적 교육자원과 기구들을 통합하는 개념이며, 이를 구현하는 시스템이 평생교육 추진체제이다. 이러한 평생교육 추진체제는 평생학습의 지원과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추진 기구 및 조직의 설치, 평생학습 추진 사업 등이 포함된다(양병찬, 전광수, 2012).

「평생교육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책무성이 어느 정도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추진 체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추진 체제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요소인 지자체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주체, 지자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협의회의 구성,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 조정 등의 요소(최상근, 2006)를 분석변인으로 선정하여 내용을 살펴보았다.

첫째, 각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주체는 해당 지자체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구리시에서는 광의의 개념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포함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지자체장의 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모든 지자체가 지자체장의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에 대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장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시행 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진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자체는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협의체의 명칭은 “장애인평생교육지원위원회”로 명명하고 있고,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장애인평생교육지원위원회 기능은 장애인 평생교육 전반적 사항에 대한 자문·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장애인평생교육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시설과 지역 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의회 구성원의 자격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장애인단체,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경기도의회 의원 1명,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 16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9권 제2호)

위촉하도록 하되,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구체적인 구성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광주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지자체에 따라 협의체에 관한 규정은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지자체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센터’ 또는 ‘학습장’의 명칭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전라북도를 제외한 지자체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기능을 살펴보면, 전주시의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발달장애인 특수성 등을 고려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사업, 장애인 평생교육 홍보 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넷째, 사천시와 군산시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사천시의 경우 평생교육 시설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성인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시설 입학과 퇴학에 관한 사항,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시설과 지역사회와 협력에 관한 사항 등 평생교육 시설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에 관해서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격, 임기 등은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발달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며, 위원은 10명 이상 13명 이내로 자격과 임기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모든 지자체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화 되어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각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7>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을 구성한 표이다. 대부분 시·도 및 시·군·구에서 제정된 조례의 장애인 평생교육 목적은 비슷하였고, 시장이나 도지사의 책무성을 명시하였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 지원과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지자체마다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경기도, 광주광역시, 군산시, 사천시를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표 7>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 구성

지역	시·도 / 시·군·구 구분	목적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시·도	서울특별시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사항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li> <li>-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li> <li>-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li> <li>-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li> <li>-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운영</li> </ul>
경기도	시·도	경기도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li> <li>-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li> <li>-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li> <li>-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연구</li> </ul>
대전광역시	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li> <li>-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기능보강 및 환경 개선</li> <li>-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li> </ul>
전라북도	시·도	전라북도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li> <li>-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li> <li>-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기관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li> <li>-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li> </ul>
광주광역시	시·도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li> <li>-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li> <li>-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기능 보강 및 환경 개선</li> <li>-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li> <li>-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과정의 개발 및 운영</li> <li>-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li> </ul>
제주도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li> <li>-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li> <li>-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li> <li>-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홍보</li> </ul>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군·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li> <li>-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li> <li>-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li> </ul>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군·구	발달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춰 다양한 역량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장애인의 문화, 예술, 여가, 체육, 지역사회 적응 등의 활동이나 관련 프로그램 운영</li> <li>-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또는 그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는 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li> </ul>
경기도 구리시	시·군·구	구리시 거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li> <li>-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li> <li>-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li> <li>-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li> <li>-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 상담 지원</li> <li>-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지원</li> <li>-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li> </ul>
전주시	시·군·구	전주시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li> <li>-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시설기능보강비 등 지원</li> </ul>
군산시	시·군·구	발달장애성인의 인권보호와 계속교육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상담</li> <li>-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li> <li>- 그 밖에 발달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li> </ul>
사천시	시·군·구	성인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사업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보호자 상담지원</li> <li>- 성인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마련</li> <li>-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li> </ul>

18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9권 제2호)

<표 7>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의 주요 내용 구성(계속)

지역	책임	시설운영	협의체 구성
서울특별시	시장	- 시설·설비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지원 -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비·간식비 -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 (자문)
경기도	도지사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또는 지정·운영 - 위탁 운영 - 위탁 경비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 운영위원회 설치 - 기능 - 구성 - 임기 - 위원장 등의 직무 - 회의 - 간사 - 이견청취 등 - 수당과 여비 등
대전광역시	시장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 - 위탁 운영	- (자문)
전라북도	도지사	-	-
광주광역시	시장	- 위탁 운영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위원회 설치
제주도	도지사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 - 위탁 운영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자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장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 위탁 운영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청장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화 운영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 보호자 교육	-
경기도 구리시	시장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홍보 -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전주시	시장	-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발달장애인 특수성 등을 고려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사업 - 장애인 평생교육 홍보 사업 -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군산시	시장	- 발달장애성인의 평생교육 -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관계자의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 발달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위원회 기능
사천시	시장	- 성인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교육 - 성인중증장애인 특수교육 - 성인중증장애인 재활훈련 -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교육자(평생교육시설 종사자)의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 교육의 질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	- 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위원회 기능

## V. 논 의

먼저, 각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각 지자체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책임자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장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사업 추진은 지자체 내 여러 영역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장에게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에서는 교육부문의 장애인 교육자치단체장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성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평생교육법」에서는 지자체 장애인 평생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평생교육 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마다 협의체에 대한 구성의 차이는 있지만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적인 차원의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김두영, 박미진, 정진숙, 2016). 하지만 현행 지자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에서 경기도,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 협의체를 두고 있는 곳은 없었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 할 수 있고, 위원들이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시설 및 단체의 대표성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셋째, 현행 지자체의 평생교육 추진시설로 평생교육센터나 학습장 등 여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은 평생교육 추진시설이 담당해야 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자체도 있었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만 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도 있었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명시한 항목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추진시설의 조직과 구성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규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따라서 각 지자체 평생교육 추진시설의 효율적인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넷째, 현행 지자체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시설의 운영을 위한 심의기구로 사천시와 군산시와 같이 지자체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관련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이는 매우 드문 경우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지자체 평생

## 2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9권 제2호)

교육 추진 시설은 지자체의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실제로 담당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운영위원회와 같은 협의체가 필요하다.

다섯째,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대상, 예산지원 범위 등 차이가 커서 향후 이와 같은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 VI. 결론

앞서 분석한 지자체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현황을 기반으로 하여 지자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자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에는 지자체 평생교육 추진 주체에 있어 일반행정의 장과 더불어 교육부문의 장이 서로 상호·보완의 협력 관계 형태로 제정되어야 한다. 특히, 학령기 이후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부문의 역할이 날로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역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과 교육 행정 부문의 역할이 상호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도평생교육협의회는 사업시행의 심의·자문 등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 시·도에 협의회가 존재하지 않거나 자문의 기능으로 명명하여 대처하고 있었고, 그나마 경기도만이 설치, 기능, 구성 등 세부적으로 협의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시·도 수준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협의회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각 협의회와 협의회 구성 및 구성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주체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과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협의회가 적극적인 구성원 참여를 통하여 실제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시설의 기능과 조직 구성, 담당인력 배치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화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자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각

조직의 인력 배치는 어떻게 이루어 질 것이며, 배치 인력의 기준과 배치방안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여러 단체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구성된 협의체로서, 기관 및 기관간의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될 때 실무자 수준에서 구체적인 사업 방향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에 대하여 협의하고 수행한다(하봉운, 2008). 시·도 전체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자문하는 의사결정기구와는 별도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경영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시·군·구 협의체의 역할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요구되고, 특히, 재정의 확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선결과제이다. 그리고 시·도 및 시·군·구,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진흥센터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현 및 이를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해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의 확보와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 단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법적·제도적 미비점은 존재한다. 이와 같이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지원 조례이다. 현재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으며, 현실적 실천을 통해 발견되는 미비점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향후 제도적 장치와 실천을 통해 발견되는 미비점이나 시행착오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면서 지자체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의 평생학습을 활성화 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8b). **제2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서울: 저자.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2013 평생교육백서**. 서울: 저자
- 권인탁 (2012). 광역단위 지역평생교육제체화의 실태와 발전과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과 평생교육·사회교육. 한국평생교육학회·일본사회교육학회 제3회 학술교류 연구대회, 177-203.

## 22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9권 제2호)

- 김기룡 (2016).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개정 이후 장애인 평생교육의 과제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 제1회 서울 평생학습 대토론회 자료집, 223-245.
- 김기룡, 이경준 (2017). 평생교육법 개정 시행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향후 과제.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 3(1), 1-30.
- 김두영, 박미진, 정진숙 (2016). 2016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 과제. **장애인 고등교육 연구**, 2(2), 175-195.
- 김두영, 박미진 (2016). 「평생교육법」 개정의 내용과 발전 과제. 제1회 서울 평생학습 대토론회 자료집, pp. 207-222.
- 양병찬, 전광수 (2012). 평생교육 조례를 통해서 본 개정 평생교육법의 실효성 분석 -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조건 정비 동향을 중심으로 -. **교육종합연구**, 10(1), 89-117.
- 이희수 (2016).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부쳐. 「평생학습타임즈」 2016년 7월 28일 [정책동향 이슈 브리핑].
- 정영선 (2011). 인권조례제정 동향과 향후 과제. **법학논총**, 18(2), 157-189.
- 최상근 (2006). 지방자치단체 평생교육 관련 조례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분석 연구. **평생교육학 연구**, 12(1), 81-103.
- 평생교육진흥원 (2011). **시도-시군구 평생교육 연계체제 구축 방안 연구**. 서울: 저자.
- 하봉운 (2008).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지원조례 분석 연구. **교육법학연구**, 20(1), 205-228.
- 홍성우, 김중래 (2013).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사업체계 및 사업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3(3), 375-401.

## Analysis of the Ordinance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on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Myeong, So-Yeon**

Dankook University

**Han, Kyoung-Gun**

Dankook University

**Jang, Chul-Seung**

Dankook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nt of each Korean municipality's ordinance on lifelong education for disabled persons through the analysis of it and to propose directions for establishing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system for the disabled based on the analysis. To this end, 12 local governments' lifelong education ordinances were selected for the analysis and the contents of those ordinanc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promotion system.

The result shows that the structure of the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system of each municipality is as follows: Above all,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re in charge of promoting the lifelong education program for the disabled. And specifically in Gyeonggi-do and Gwangju metropolitan city, councils such as 'Lifelong Education Support Committee for Disabled Persons' are formed as consultation, coordination, and advisory bodies for planning and decision-making for overall lifelong education. And, in 11 cities, provinces and municipalities which have enacted such ordinances,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such as lifelong education centers and learning centers for the disabled are installed. Lastly in Sacheon City and Gunsan City, decision-making mechanisms such as the 'Steering Committee' are established as consultation, coordination, and advisory bodies for dealing with the issue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directions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were discussed. First, the roles of gener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should be mutually strengthened. Second, the composition of the city / provincial education council should be structured so as to ensure the representativeness and professionalism of the main players of lifelong education for

## 2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9권 제2호)

the disabled in the community. Third, the regulations on the functions, organization and staffing of the facilities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should be specified.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lated councils for the smooth operation of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for the disabled. Fifth, the budget and support for lifelong education for the disabled should be specified.

**Key Words :**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local government, regulation, lifelong education advancement system, lifelong education support system.

---

논문 접수: 2018. 02. 07 심사 시작: 2018. 02. 07 게재 확정: 2018. 04. 03